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치, 종교적 성격의 공연, 전시 및 행사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연장 대관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일부 삭제(안 제4조제4호)
 - 정치, 종교적 성격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“사용자”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·공연·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</u> 5. <u>“이용자”란 제1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정치, 종교적 성격의 공연, 전시 및 행사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 4. (개정안 제5호와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제11조(관람료) ①·② (생략) ③ 관람권의 수표는	제11조(관람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	제11조(관람료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
예술회관에서 전담하
되 예매를 위탁, 판매
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제12조의 규정에
의한 회원과 기타 단
체에 대하여는 회관
이용에 대해 할인혜
택을 줄 수 있다. 다
만, 단체는 30인 이상
으로 본다.

제13조(손해배상) ①
(생략)

② 사용자가 제1항의
관리의무를 게을리
하여 예술회관 및 기
타의 설비를 훼손 또
는 망실하였을 때에
는 「공유재산 및 물
품 관리법」에 따라
손해배상을 하여야
한다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시장은 관람자의
입장을 거절하거나
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----- 전담하
되, 사용자는 예매 및
매표를 위탁 할 ----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--- 20-----
---.

제13조(손해배상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사용자 및 이용자
가 고의나 과실로 --

-----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--

----- 이용자 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개정안과 같음)

⑦ (개정안과 같음)

제13조(손해배상) ① (개
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15조(입장의 제한)
(개정안과 같음)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